

# 업무직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 2015. 1. 5  
규정 제806호 ]

소통복지처 02-6311-2288

일부개정 2015. 2. 27 규정 제813호  
2016. 1. 28 규정 제878호  
2016. 9. 1 규정 제897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업무직(대체기간제 포함)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호봉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과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라 함은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제2장 보수의 계산과 지급방법

제3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산정기준)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할액 또는 시간당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액은 기본급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급은 기본급을 209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결근, 휴직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산할 기본급과 제수당은 익월 급여에서 정산한다.

제6조(신분변경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승급,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복직의 경우,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3.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일자로 퇴직발령 된 직원은 제외하며 6개월 미만 근무 직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제7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보수)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기본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급식보조비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8조(휴직 및 업무상재해자의 보수) 휴직 및 업무상재해 기간 중의 직원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2.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을 제외한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을 중지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재징계 처분 없이 확정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에 미지급한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징계자의 보수) 인사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처분기간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봉의 경우에는 감급하여 지급하되,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대하여 50%만 지급하고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을 중지한다.

제11조(결근자의 보수) ①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계결근한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상시의 지급) ①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일전이라도 월 임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휴직자와 퇴직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기본급

제13조(기본급) 업무직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 제4장 제수당

제14조(수당의 종류) 공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으며,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장 퇴직금

제15조(퇴직금의 지급) ①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단수제(평균임금×근속년수)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16조(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단, 인센티브성과급은 기본급×개인별 지급률)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으로 한다. (개정 16.1.28.)

## 제6장 복리후생비

제17조(복리후생비의 종류) 공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장 보칙

제18조(단수처리) 보수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는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 1. 1. 부터 적용한다. 단, 2014. 1.21 이전 퇴직한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호봉획정에 대한 경과조치) 2014.12.12 이전 입사자의 획정호봉이 5호봉 미만인 경우에는 5호봉 도래 전까지 급여지급 기준호봉을 5호봉으로 적용하며, 업무직 최저임금항목 합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도달 전까지 지원수당(월 15,000원/인)을 지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2.27., 2016.1.28., 2016.9.1.)

기 본 급 표(제13조 관련)

(단위 : 원)

호 봉	업무직	안전업무직
1	1,348,790	1,348,790
2	1,360,040	1,359,790
3	1,371,290	1,370,790
4	1,382,540	1,381,790
5	1,393,790	1,392,790
6	1,416,290	1,414,790
7	1,440,790	1,438,790
8	1,465,290	1,462,790
9	1,489,790	1,486,790
10	1,514,290	1,510,790
11	1,538,790	1,534,790
12	1,563,290	1,558,790
13	1,587,790	1,583,290
14	1,612,290	1,607,790
15	1,636,790	1,632,290
16	1,661,290	1,656,790
17	1,685,790	1,681,290
18	1,710,290	1,705,790
19	1,734,790	1,730,290
20	1,759,290	1,754,790
21	1,783,790	1,779,290
22	1,808,290	1,803,790
23	1,832,790	1,828,290
24	1,857,290	1,852,790
25	1,881,790	1,877,290
26	1,906,290	1,901,790
27	1,930,790	1,926,290
28	1,955,290	1,950,790
29	1,979,790	1,975,290
30	2,004,290	1,999,790

**제수당지급기준**(제14조 관련)

항 목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보전수당	모타카운전원 월 202,500원 이용사 월 682,900원 +기본급10% 조리원 월 104,700원 지하철보안관 월 227,000원 전동차보수 월 기본급 16.5% 궤도보수 월 기본급 11.0%	실제 근무한 일수에 일할 계산 지급한다.	
기술수당	기 능 장:60,000원 기 사:50,000원 산업기사:40,000원 기능사:20,000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소지 자로써 해당업무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자격면허 수 당	2종 : 월 20,000원	철도안전법에 의한 운전면허소지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써 해당 업무종사자에게 지급한다.	
상여수당	정 급 : 기본급의 200%	2월~11월에 기본급의 10%를, 설·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재직 중 직원에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월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인센티브성과급 : 보수월액의 300%이하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장기근속 수 당	5년~ 9년 :월50,000원 10년~14년 :월60,000원 15년~19년 :월80,000원 20년~24년 :월110,000원 25년 이상 : 월130,000원	근속연수의 계산은 우리공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안전업무직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초과 근무 수당	시간외	통상임금×1.5/209×시간	소속장의 명을 받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야간	통상임금×0.5/209×시간	
	휴일	통상임금×1.5/209×시간	
연차휴가수당	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일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매년 5월말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2회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가족수당	배우자 : 40,000원 부양가족 1인당 : 20,000원 가산금 : 셋째이후의 자녀부터 적용 - '12.1.1 이전 출생자 : 30,000원 - '12.1.1 이후 출생자 : 80,000원	부양가족 4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2008.1.1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는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근로자(직원)일 때는 1인에게만 지급한다.	

[별표 3] (개정 2016.1.28., 2016.9.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제17조 관련)

항 목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급식보조비	월 90,000원	신분변동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효도휴가비	삭제	
월동보조비	삭제	
야간교통보조비	일 15,000원	지하철보안관에게 야간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통신보조비	월 40,000원	지하철보안관, 조리원, 이용사에게 지급한다.
직무보조비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